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11. 21.(수) 09:33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6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3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6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62차 및 제6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19~'20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2018-66-555)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19~'20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19~'20년도 공익채널 선정,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대상과 인정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019~2020년도 공익채널 선정은 공익성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3개 채널, 총 9개 채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회 전체 동의로 선정 건의한 RTV와 MBC NET을 추가 선정한다입니다. 선정채널은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직업방송, 다문화 TV, 육아방송, RTV, 과학·문화진흥 분야에서는 아리랑TV, 예술TV Arte, 사이언스TV, 교육 및 지역 분야에서는 EBS 플러스1, EBS English, EBS 플러스2, MBC NET입니다. '19~'20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은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인정 조건 및 권고 사항을 부가한다입니다. 인정조건은 신청서상의 2019년, 2020년 화면해설방송 비율 17.5%를 이행할 것, 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이 확대되도록 그에 관한 2019년, 2020년 세부 이행계획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권고사항은 방통위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춘 자막·수어·화면해설 제작 인력을 확보할 것, 편성표에 장애인방송 유형을 반드시 표기할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70조 제3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에 따라 '19~'20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대상과 인정 조건 등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18년 7월 18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8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공익채널 15개, 장애인복지채널 1개 채널이 신청 하였습니다.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공익채널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의 65%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한 채널 중 공익성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를 선정하고 RTV와 MBC NET을 추가선정 건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선정 결과는 4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은 신청 사업자 간 재정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심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 규모에 따라 사업자를 구분하여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성격의 채널이

공익채널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채널과 공익채널 간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선정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채널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의 70%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TV가 단독신청하여 인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은 방통위가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영실적에 관해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복지방송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방송 전문 VOD 채널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공익성 방송분야 별로 3개 채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회가 건의한 RTV, MBC NET은 추가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고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인정 조건 및 권고 사항을 부가하겠습니다. 기타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제도 개선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안전을 의결해 주시면 공익채널 선정서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서를 11월 중 교부하고, 향후 분기별 운영실적을 매분기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이번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동안 공익채널 선정제도는 1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 방송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방송의 교육기능 제고 등의 측면에서 많은 결실이 있지 않았나 자평해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채널 제도로 우리가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사회에서 아직 따스한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복지와 정보접근권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년과 다르게 심사를 공정하게 기여하기 위해 심사 항목 중 대폭 계량 항목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선정이 되면 매년 선정작업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2년으로 안정성을 부여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보고받은 대로 3개 채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점수는 3위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1개 채널을 각각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심사위원단의 전원 건의로 추가로 선정해 달라고 아까 보고받으신 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보시고 RTV 시민방송과 MBC NET 2개 채널을 추가로 공익채널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심사위원회 건의를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가 있었는데 장애인채널 인정제도를 심사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 쪽에서 건의문이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전국에 약 50만명 정도가 있고, 이를 대표하는 연합회 쪽에서 건의해 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방송의 비율이 전체 방송 중 많게는 10%, 적게는 3% 정도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심야 시간 내지는 낮시간에 방송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방송을 잘 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TV가 있지만 오늘 인정됐던 장애인복지채널이 딱 1개입니다. 그 1개가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장애인들에게 충족시키는 방송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어떤 건의를 하느냐 하면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채널로

열어 주시면 낮시간이나 편리한 시간에 장애인이 접근해서 방송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보기 VOD 서비스 채널을 허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장애인방송복지채널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방송정책국 소관은 아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방송정책국 소관은 아니고 방송기반국의 시청자지원팀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방송기반국인데 처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 조경식 사무처장

-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마 건의문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위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복지TV에 VOD 서비스가 없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복지TV는 VOD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아예 없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거기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쉽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결국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 이효성 위원장

- 별도로 한다기보다 그 채널에서 VOD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장애인들 복지와 관련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다른 의견은 없고 여기에 안전으로 올라온 것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이니까 그대로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것은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방송채널 인정 여부를 하고 있는데 등록PP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행정기능은 우리가 아니고 과기정통부 아닙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장애인복지TV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사를 해서 이번에 인정이 됐는데 문제점 개선이 계속 되고 있는지 위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일반 등록채널에 대한 정책행정기능이 과기정통부에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스운 모양입니다. 원래 구(舊) 방송위 시절에는 모두 방송위원회가 관장하던 사항이고, 또 방송통신위원회로 처음 출범했을 당시에는 이것이 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정부조직의 희한한 기형적인 형태로 잘못되면서 생긴 것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채널, 장애인복지채널에 대한 정책을 하면서도 이것을 해 놓고 이 채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방송과 관련된 정책행정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어서 보다 이런 정책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이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공익채널 선정 그리고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 이후에 첫 번째 이루어진 심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고시를 제정하면서 1년 단위 심사에서는 하기 어려워서 제재가 없었는데 2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1년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자격이 미달될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제가 생긴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선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취소 권한도 있다고 법률자문 결과는 나왔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러면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조금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조건을 부가했을 때는 인정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단순히 조건 없이 선정한 경우에는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서 하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취소까지 이르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어쨌든 점검이나 아니면 이행실적을 정확하게 챙겨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기에 보면 선거방송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건의 사항으로 공공성격의 채널과 공익채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선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었는데 건의한 내용 자체도 타당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선거방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총' 대신 '투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의 중요성, 또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히스토리, 그리고 이것이 굳이 국회의원 선거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교, 주민자치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선거의 내용들이 잘 알려진다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탈락이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선거방송 같은 경우 이번 심사에서도 성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공익채널보다는 공공채널 성격에 맞다고 판단되어서 공익채널 선정 필요성에서 과락의 점수를 받아서 탈락이 됐습니다. 구조적으로는 현행 방송법 체계상으로는 공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소관 권한이 있는 과기정통부에서 추가로 공공채널 지정을 검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3개 채널만 공공채널로 선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지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드리면 지금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선거방송과 KTV 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위원들도 국가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채널 쪽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괜히 공익채널로 선정되면 다른 민간 채널이 기회를 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기정통부에서 공공채널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아마 그렇게 지정한 예가 아직 없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까지 3개 채널 KTV, 국회방송, 방송통신대학TV 3개만 지정해 놓았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마 과기정통부의 과제가 아닌가, 심사위원회들은 일단 배제하고 다른 채널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담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채널은 과기정통부이고 공익채널은 방통위로 되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려 놓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명을 잘 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공공채널과 공익채널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공공은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것이고 중앙선관위 정도는 당연히 공공채널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요.

○ **허 욱 부위원장**

- 그 내용은 정리해서 건의사항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제가 작년에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결할 때 정책효과에 대해 시계열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년이나 5년 단위로 끊어서 원래 있었던 정책목표가 진짜로 효과를 내고 있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심사 때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공감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 후속결과에 관해 보고를 들은 바 없습니다. 어떻게 진전되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예산이 2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행실적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효과분석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증액 반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지난번 심사 때도 복지채널의 정책효과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라도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공익채널 중에 선정을 해서 꼭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위원님들이 안건 처리 과정에서 개선을 요청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수용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관련된 부분들은 구체적인 별도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무처장께서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정책적 제안이나 요청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장애인 전문 VOD 채널, 이것은 아무래도 사무처에서 하기는 버겁지요. 왜냐하면 전문 VOD 채널 신설하는 것은 플랫폼사업자들이 하면 정부조직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과기정통부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과기정통부와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이 나온 김에 공공채널과 공익채널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EBS 같은 경우 공교육 보완, 그리고 사회교육 차원에서 수용자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계속 공익채널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랑TV는 공공기관인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운영하지만 이것은 공공채널로 있다가 빠지면서 공익채널로 계속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국군방송은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런 것입니다. 국군방송 그리고 선거방송, 서울특별시 TBS, 이렇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가 기준을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공채널 성격의 채널들이 공익채널에 들어오면 실제로 민간에서 공익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충돌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민간에 있는 사업자들이 재정이나 조직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공익채널의 정책 취지상 우리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청서가 많이 들어오면 심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신청서류를 보긴 보지 않습니까? 다 검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정책적 목적 때문에 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새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공공채널 성격의 채널에 대해서는 아예 공익채널로 접수하는 단계에서 접수를 받지 않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채널과 순수 민간에서 운영하는 채널은 경쟁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들은 더 고민해 주십시오. 심사위원님들 괜히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한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해서 사무처나 심사위원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잘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제방송교류재단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 교육분야도 EBS에서 하는 것도 완전히 다 공공채널인데 이런 것도 근본적인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공공채널, 공익채널이 하나는 과기정통부에서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기왕에 공익채널과 공공채널을 엄격히 분류해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채널은 별도 예산으로 하도록 하고, 공익채널은 정말 공공채널이 아닌 성격에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공공 성격이 있는 것은 다 빼고 공익 성격을 더 많이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공공채널이다, 공익채널이다 이런 문제를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려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양이 굉장히 우습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검토를 준비하되 어떻게 해서든지 과기정통부로 잘못 넘어가 있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완전히 일원화시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총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66-556)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12월에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외주제작 인정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저작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대책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있었습니다. 고시이기 때문에 20일간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일에 규개위에서 비규제 대상으로 심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순수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 비율, 즉 고시 제11조제7항이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주사의 저작권 보유 합의조항 유무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저작권 보유합의 유도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 조항의 인정비율 가중치, 즉 110%보다 높은 130%로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인정비율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으로서는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순수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개 기관에서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입니다. 그 이유는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의 일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순수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를 인정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저작권 전부를 외주제작사가 보유할 경우에만 가중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원회의 행정예고안에도 저작권의 저작권 전부 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명확히 관련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는 조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결하여 주시면 고시이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관보 게재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은 아무래도 표철수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은 외주제작사와 일반방송, 말하자면 권한이 큰 방송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외주제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다른 쪽에서 의견들이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외주제작사 저작권 보유에 관련된 아주 강한 정책적 의지를 나타내는 조항 같습니다. 원 문안에 보면 저작권 보유에 합의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중치를 주는 것인데 합의조항이 아니라 저작권을 외주제작사가 전부 보유할 경우에만 가중치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를 위해 일정 부분 나누어 갖는 경우에는 이 인센티브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하면 외주제작 인정기준에 선택적 수익배분요건이 있습니다. 즉, 저작권 자체는 방송사가 보유하지만 외주제작사와 저작권에 대해 30% 수익배분 하면 외주제작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 부분은 별도로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러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은 현재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현재 사업자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방송사 그리고 제작사 관계자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방통위의 주 역점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어떤 형태든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100%는 아니지만 51% 이상 보유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만약에 일부 보유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다시 한 번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저작권 전부를 보유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30%를 인정하는 것이고 일부는 보유한다는 것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 형식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기준에서 몇 가지 중 일부를 보유할 경우에는 인정한다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이나 내년에 되는 부분을 봐 가면서 인정기준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것은 곧 필요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안건 또한 지난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업무보고 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 그리고 외주제작 스태프들의 인권 제고 차원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외주제작 정책 도입 28년 만에 어떻게 보면 범정부적으로 그런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또 편성평가정책과장님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지난번에 외주제작 스태프 인권선언 발표도 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개선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또 외주제작 스태프들의 인권이 바로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또 추진하면서 그것을 안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다른 위원님들 지지도 정말 중요했지만 국장님과 특히 과장님의 수고가 정말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발표하고, 또 금년 초에 방통위 정책과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한 달 정도 남겨 놓고 있는데 연초에 연말까지는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스태프들의 인권 향상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남겨 놓은 시점에서 마지막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 그동안의 성과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40여일 남아 있지만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같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말씀하시지요.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외주정책에 대해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편성규제에 대한 부분 이외에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내지는 개선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인권 선언문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선언이긴 하지만 그때 방송협회라든지 모든 사업자들이 나와서 서명식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스스로의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방송사업자들도 올해 그런 것으로 인해 스스로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이나 또는 언론노조와의 정책협의안 이런 부분이 다 하나씩하나씩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 제정인데 가이드라인 제정도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할 부분이 방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인데 그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추후 법적인 보완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5개 부처가 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5개 부처가 계속 분기별로 점검회의를 하는 등, 그리고 이번에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3개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우리가 결국 주관해서 전체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부처인 문화부와 노동부도 같이 나름 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들은 관계부처들 같이 협력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지금 중간광고와 관련해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외주제작사와 관련해서 많이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예, 거기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 계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몇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편성평가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것인데 이런 고시를 마련하느라 고생하였습니다. 현행 제11조제5항, 제6항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지요?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100분의 110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촬영 원본 공유, 주시청시간대 교양분야도 그대로 인정이 되고, 그러면 제7항만 신설되는 것이지요?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신설하기 위해 우리가 행정예고를 한 뒤에 의견수렴을 해서 규개위 심사를 거쳐 당초 원안을 수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다, 사업자 의견, 또 단체 의견을 들어서 당초 했던 행정예고안을 수정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 서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입법예고나 행정예고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반영하는 노력들이 꼭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많이 할 텐데 그럴 경우는 형식적으로 행정적 절차만 요식행위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 사업자들의 고충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들을 면밀하게 경청해서 그 부분들을 입법예고나 행정예고가 나간 이후에도 바꿀 것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경우가 아주 모범사례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런 관행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개 부처가 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중 가장 값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방송사업자입니다. 방송사업자에 관한 정책행정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방송사업자들의 여러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정책행정기능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러 부처와 협의하지만 주력인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명심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제2018년도 제6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3분 폐회 】